# 劃 경북대학교 휴학 및 복학 규정 안내 (통합형)

#### 1. 휴학 신청 방법

경북대학교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의 '휴·복학 신청'에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고, 불가능한 경우학과(부)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특히 창업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, 창업지원부(GP806)에 서류 제출 및 상담이 필수입니다.

#### 2.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
경북대학교의 휴학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뉘며, 각각의 제출 기한과 필요 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.

- 일반휴학: 수업일수 1/2 이내, 제출서류 없음
- **질병휴학**: 수업일수 3/4 이내, 4주 이상 진단서
- 육아휴학: 수업일수 3/4 이내, 자녀 관련 증빙서류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
- 군입대휴학: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
- 창업휴학: 사업자등록증, 신청원, 사업계획서, 성적증명서(해당자), 창업동아리 증명서(해당자), 매출증빙자료(해당자)

#### 3. 휴학 가능 기간

학사과정 기준 일반휴학은 6학기까지 가능하며, 약학대학은 8학기, 예과는 3학기까지 허용됩니다. 편입생은 3학기(약학 편입자는 6학기)까지 가능합니다.

석사과정은 4학기, 박사과정은 6학기, 석·박사통합과정은 8학기(복합학위는 12학기)까지 가능하며, 질병·육아·창업휴학은 각 4학기 추가 가능합니다.

육아휴학은 자녀당 4학기까지 허용되며, 질병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4. 군휴학 유의사항

수업일수 3/4 이전 입영통지서 제출 시 군휴학 처리가 가능하나, 이후에는 일반휴학으로만 처리되며 학점 이수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도 입영일자에 따라 군휴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구분됩니다. 군복무 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, 부사관 등 추가 복무는 군휴학 처리되지 않으므 로 복학 후 일반휴학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5. 창업휴학 유의사항

창업휴학은 1차 서류 검토 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, 최소 2주 이상의 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.

대학원생은 별도 상담이 필요하며(☎ 950-2378), 창업휴학은 반드시 재학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
휴학생 상태에서는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복학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6. 복학 신청 방법

복학도 통합정보시스템 '휴·복학 신청'에뉴에서 신청하며,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복학 신청은 휴학 기간 종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
### 7.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
• 일반 복학: 제출서류 없음

• 군제대 복학: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 증빙서류

• 귀향조치 복학: 귀향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, 귀향증 제출

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(2개 학기)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학기 구분은 제1학기(3월<del>8월), 제2학기(9월</del>2월)로 나뉩니다.

## ★ 참고 근거

- 학칙 제26조(휴학), 제27조(복학)
- 휴·복학 및 등록 업무 처리 지침
- 경북대학교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2장 창업휴학